

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반려동물
동반여행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8 월 19 일

여 수 시 장

2024. 8. 19. 여수시
시장인장

여수시 조례 제2116호

붙임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1부

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반려동물 동반여행”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반려인”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기본계획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-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
 -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·관·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「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5조(세부사업)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
2.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행사
3.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
4.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
5.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
6.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
7. 반려동물용품 자판기 설치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반려동물 친화공원) 시장은 반려동물과 그 반려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)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·연구소,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·단체·기관 등을 선정하여 「여수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